

	<b>교직원복리증진지원규정</b>	규정번호	3-1-6
		제정일자	2012.03.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복리지원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사고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나, 각 분야의 복리 증진 지원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이상의 교원과 직원, 조교를 통칭한다.
2. “자기계발지원비”라함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식계발, 정서함양 등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3. “동호회”라 함은 우리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구성된 건전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분) 교직원 복리증진지원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동호회 지원
2. 자기계발지원비 지원
3.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사항

## 제2장 동호회 지원

제5조(목적) 교직원 동호회의 지원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하고 유익한 취미생활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심신 단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
2. 교직원간의 인화단결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3 사회봉사를 통하여 교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등록) ① 동호회의 등록은 매년 3월에 담당부서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한 동호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운영결과보고서(기존 동호회에 한함)
2. 동호회 회원명부
3. 회칙 사본

③ 동호회 명칭이 변경된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동호회 명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동호회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3. 동호회 인가를 위해 형식적으로 회원 등록한 경우
4. 동호회가 해체, 해산된 경우
5. 회원수 변경으로 자격에 미달된 경우

제8조(인정기준) ① 동학회 구성회원이 최소 15인 이상 이어야 한다.

② 동학회 등록 후 1년에 최소 3회 이상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동학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학회는 설립취지, 활동 계획 등을 회칙으로 정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장려) ① 동학회의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학회로 인정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학회의 활동이 대학의 홍보에 기여하였거나 명예를 높인 우수동학회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기 및 절차) ① 동학회 지원 시기는 3월에 등록된 동학회를 기준으로 전년도 2월에 보고된 운영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4월에 지원한다. 다만, 신규동학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동학회 지원은 동학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동학회가 해체, 해산된 경우 미 집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자기계발지원비의 지원

제11조(목적)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지식계발과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분야) ① 자기계발지원비의 지원 분야는 건강관리(건강검진, 병원

진료비,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스포츠센터 등록, 지식계발(학원수강), 정서함양(도서 및 음반구입, 공연관람(2인까지)) 등이 해당된다.

② 자기계발지원비의 지급 적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종(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2. 레저업종(실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등)
3. 사행업종(카지노 등)
4. 기타(총포류 등)

제13조(지급액) 자기계발지원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지급방법) 자기계발지원비의 지급방법은 개인이 먼저 사용 후, 학기말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지급신청) 자기계발지원비의 지급대상자는 자기계발지원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 제4장 보 칙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자기계발지원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기계발지원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자기계발지원비지급규정은 폐지한다.